

## 제 8 장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제8.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다음에 의하여 규정된 정의와 용어를 적용한다.

- 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SPS협정),
- 나. 국제수역사무국(OIE),
- 다.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그리고
- 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 제8.2조 일반규정

1. 이 장은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대해 적용된다.

2. 양 당사국은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농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의 무역을 촉진하며, 병해충이나 질병의 유입 또는 전파를 방지하고 식물 및 동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증진시킬 것에 합의한다.

3. 이 장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채택 및 시행을 지도하는 규칙 및 규율의 체계는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이 장에 기술되지 아니한 여타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사항은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8.3조 당사국의 권리

양 당사국은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에 따라,

- 가. 이 장에 따라 자국 영역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상 필요한 경우 어떠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도 채택, 유지 또는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 나.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 제8.4조 당사국의 의무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 유지 또는 적용하는 모든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다음과 같이 되도록 보장한다.

- 가.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거나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드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지 아니한다.
- 나.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제5조제7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고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이 존재할 경우, 자국 상품과 타방 당사국의 유사 상품간 또는 타방 당사국의 상품과 타국가의 유사 상품간에 차별적이거나 불공정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 제8.5조 국제 표준 및 조화

1.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에, 각 당사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의 수준을 감소함이 없이,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이에 기초하도록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 또는 위생및식물위생 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제5조에 따라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수준을 제공한 결과로서,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수준과는 다른 보호수준을 제공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3. 보다 높은 수준의 조화를 달성할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모든 측면에 대한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에 가능한 한 최대로 협력하며, 다음의 기구들, 즉 식물건강사항에 관하여는 국제식물보호협약, 동물건강에 관하여는 국제수역사무국, 식품안전에 관하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정한 표준, 지침 및 권고에 따른다.

4. 이 조 제3항에 열거된 국제기구가 다루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따라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양 당사국 모두가 회원인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의 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할 수 있다.

#### 제8.6조 동등성

1. 수출당사국이 자국의 조치가 타방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타방 당사국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자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한다.

2. 수출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수입당사국의 요건을 일관되게 충족함을 보장할 목적상 수출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및 다른 관련 절차의 체계 또는 절차의 검증을 위해 수입당사국에게 자국 영역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 제8.7조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 수준 결정

1.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관련 위험평가 지침 및 기술을 고려하여, 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

2. 양 당사국은 위험을 평가하고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 및 그 밖의 요소를 고려한다.

- 가. 병해충 또는 질병의 유행,
- 나. 병해충 또는 질병 안전지역의 존재,
- 다. 관련 생태학적 및 환경적 조건,
- 라. 박멸 또는 방제 프로그램의 유효성,
- 마. 위생 및 식물위생 서비스 구조 및 조직, 그리고
- 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제, 감시, 진단 및 그 밖의 절차.

3.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 평가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의 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한다.

- 가. 병해충 또는 질병이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경우에 생산이나 판매에 미치는 손실을 기준으로 한 잠재적 피해,

나. 수입당사국 영역내에서의 방제 및 박멸 비용, 그리고  
다.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대안적인 접근방법의 상대적 비용 효율성.

4. 양 당사국은 자국의 적정보호수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무역효과를 최소화할 목적을 고려하며, 그러한 보호수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달성할 목적으로,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차별을 초래하거나 위장된 제한이 될 수 있는 자의적 또는 부당한 구별을 회피한다.

5. 양 당사국은 이용가능한 과학적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타방 당사국 및 다른 국가들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로부터의 정보를 포함한 이용가능한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잠정적인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평가를 완료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는 당사국은 자국의 평가를 완료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내에 잠정적인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재검토한다.

#### 제8.8조 병해충 또는 질병 안전 지역 및 병해충 또는 질병 저발생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의 반영

1. 양 당사국은 자국의 동물 또는 식물의 병해충 또는 질병에 관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상품의 원산지역 및 도착지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상의 특징을 반영한다. 지역의 특징을 평가할 때, 양 당사국은 특히 특정 질병 또는 병해충의 발생빈도 수준, 박멸 또는 방제계획의 존재,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되는 적절한 기준 또는 지침 및 그 밖의 요소들을 고려한다.

2. 양 당사국은 특히 관련 국제표준에 따라 병해충 또는 질병 안전 지역 또는 병해충 또는 질병 저발생 지역의 개념을 인정한다. 그러한 지역을 결정할 때, 당사국은 지리학적 위치, 생태계, 역학적 감시 그리고 당해 지역에서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방제의 효율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3. 자국 영역의 어떤 지역이 특정 병해충 또는 질병의 발생이 없거나 발생이 적은 지역이라고 선언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상황을 객관적이면서 타방 당사국을 만족시킬 정도로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당국에 의해 채택된 보호조치에 기초하여 당해 지역이 그러한 상태로 유지될 것임을 보증한다.

4. 병해충 또는 질병 안전 지역 또는 저발생 지역을 인정받고자 하는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이를 요청하고, 관련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 목적상, 이러한 요청 당사국은 검사, 시험 및 다른 관련 절차를 위해 타방 당사국에게 자국 영역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부여한다.

5. 이러한 인정을 위한 요청이 거절된 경우에, 거절한 당사국은 그 결정의 기술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한다.

#### 제8.9조 방제, 검사 및 승인 절차

1.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침가물질 사용의 승인에 관한 제도 또는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오염물질에 대한 허용수준 설정에 관한 제도를 포함한 방제, 검사 또는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의 부속서 C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수입당사국은 수입되는 동물, 식물 및 그 밖의 관련 상품이 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들에 일관되게 합치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이러한 검증 과정을 용이하게 한다.

#### 제8.10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부속서 B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주무당국을 통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변경을 통보하며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2. 이에 더하여, 타방 당사국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가.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변동이나 변경사항은, 타방 당사국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한 새로운 규정의 발효 60일전에 통보한다. 동 60일의 기간은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부속서 B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외래성 질병 및 국제수역사무국의 목록 A에 열거된 질병의 출현과 같은 동물건강 분야에 있어서 발생하는 변동사항은 잠정 진단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다. 검역 병해충의 출현과 공식적 방제하에 있는 병해충의 전파와 같은 식물위생 분야에 있어서 발생하는 변동사항은 병해충을 검증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라. 특정 식품의 소비와 관련한 건강상의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 이 명확히 확인된 식품관리상의 비상상황은 위험을 확인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그리고

마.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호 및 다호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 및 병해충과 관련한 역학상 중요한 발견 및 중대한 변화는 그 질병 및 병해충을 검증한 때로부터 최대한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 제8.11조 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동물 및 식물 건강, 식품안전 및 무역분야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위원회)를 이에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정이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구성된다.

3.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의 기능은 예시에 불과하다.

가.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조정,

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한 특정 사항에 관한 협의의 촉진,

다. 소위원회의 범위와 권한 설정 및 결정,

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적용 및 시행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간의 기술적 협력을 증진, 그리고

마. 이 장의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시.

4. 위원회는 필요가 발생하고 양 당사국이 설치에 합의한 경우에 동물건강, 식물건강 및 식품안전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러한 소위원회의 구성원은 양 당사국의 각 해당분야의 관련당국에 의해 지명된다.

5. 소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예시에 불과하다.

가. 각 소위원회의 권한 범위내에서의 활동의 위임사항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

나.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적 세부운용사항과 관련된 관심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 그리고

다. 양 당사국간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의 신속한 교환 체제를 구축.

6.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매 2년마다 한번 개최된다. 일방 당사국이 추가적인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회의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개최된다. 소위원회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된다. 회의는 양 당사국이 합의시 전화, 화상회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해 개최될 수도 있다.

7. 위원회는 이 장의 이행과 관련하여 자유무역위원회에 연례적으로 보고 한다.

#### 제8.12조 기술적 협의

1. 일방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내용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있는 때에는 타방 당사국과 협의를 개시할 수 있다.

2. 일방 당사국이 협의를 요청하고 이를 위원회에 통보한 경우에 위원회는 협의를 촉진하며 당사국에게 구속력이 없는 기술적 조언 또는 권고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 작업그룹이나 여타의 토론회에 문제가 되는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3. 타방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해석 또는 적용이 이 장의 규정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는 일방 당사국은 그와 같은 불합치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4. 양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협의를 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러한 협의는 제19.4조에 따른 협의가 된다.